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시행 2015.1.2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9호, 2015.1.2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6.12.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용수설비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1.23.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6.12.30.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용수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에 따른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012.8.20. 개정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용수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에 따른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한다.
2015.1.23. 개정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용수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에 따른 소화수조 및 저수조"를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소화수조 및 저수조"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란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8.20.>
2. "채수구"란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를 말한다.<개정 2012.8.20.>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6.12.30.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라 함은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을 말한다. 2. "채수구"라 함은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를 말한다.	
2012.8.20. 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란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을 말한다. 2. "채수구"란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를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라 함은"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채수구"라 함은"을 ""채수구"란"으로 한다.

제4조(소화수조 등) ①소화수조,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소방대상물의 구분	면 적
1.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7,500㎡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12,500㎡

③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채수구는 다음 표에 따라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mm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소요수량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채수구의 수	1 개	2 개	3 개

나.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④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2.9.15. 제정	제111조 (소화수조등) ① 소화수조소방펌프차 동차가 채수구로부터 2미터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표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table><tr><td>소 방 대 상 물 의 구 분</td><td>면 적</td></tr><tr><td>영 제17조제14호 "가"목의 규정에 의 한 소방대상물</td><td>1천 500제곱미터</td></tr><tr><td>영 제17조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 한 소방대상물</td><td>1만 2천 500제곱미터</td></tr></table> ③소화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미터이상이거나 직경이 0.6미터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세제곱미터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이상, 80세제곱미터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소방용호오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밀리미터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table><tr><td>소요수량</td><td>20세제곱미터이상</td><td>40세제곱미터이상</td><td>100세제곱미터이상</td></tr><tr><td></td><td>40세제곱미터미만</td><td>100세제곱미터미만</td><td></td></tr><tr><td>채수구의수</td><td>1개</td><td>2개</td><td>3개</td></tr></table> 3.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④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1분당 0.8세제곱미터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 방 대 상 물 의 구 분	면 적	영 제17조제14호 "가"목의 규정에 의 한 소방대상물	1천 500제곱미터	영 제17조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 한 소방대상물	1만 2천 500제곱미터	소요수량	20세제곱미터이상	40세제곱미터이상	100세제곱미터이상		40세제곱미터미만	100세제곱미터미만		채수구의수	1개	2개	3개	
소 방 대 상 물 의 구 분	면 적																			
영 제17조제14호 "가"목의 규정에 의 한 소방대상물	1천 500제곱미터																			
영 제17조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 한 소방대상물	1만 2천 500제곱미터																			
소요수량	20세제곱미터이상	40세제곱미터이상	100세제곱미터이상																	
	40세제곱미터미만	100세제곱미터미만																		
채수구의수	1개	2개	3개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제111조 (소화수조등) ① (생략) ②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표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생략) ③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 (생략)	제111조제2항본문 및 제3항본문중 "소화수조"를 각각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로 한다.																		
1995.5.27. 개정	제111조 (소화수조등) ① (생략) ② (생략)	제111조제2항의 표중 "영 제17조제14호 "가"목의"를 "영 제31조제2항제1호의"로, "영																		

	<table><tr><td colspan="2">소 방 대 상 물 의 구 분</td><td>면 적</td></tr><tr><td colspan="2">영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td><td>7천 500제곱미터</td></tr><tr><td colspan="2">영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td><td>1만 2천 500제곱미터</td></tr></table> ③ ~ ④ (생략)	소 방 대 상 물 의 구 분		면 적	영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		7천 500제곱미터	영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		1만 2천 500제곱미터	제17조제14호 "나"목의"를 "영 제31조제2항제2호의"로 한다.
소 방 대 상 물 의 구 분		면 적									
영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		7천 500제곱미터									
영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		1만 2천 500제곱미터									
2001.7.27. 개정	제111조 (소화수조 등) ① (생략) ② (생략) <table><tr><td colspan="2">소방대상물의 구분</td><td>면적</td></tr><tr><td colspan="2">1.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td><td>7천500제곱미터</td></tr><tr><td colspan="2">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td><td>1만2천500제곱미터</td></tr></table> ③ ~ ④ (생략)	소방대상물의 구분		면적	1.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		7천500제곱미터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1만2천500제곱미터	제111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대상물의 구분		면적									
1.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		7천500제곱미터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1만2천500제곱미터									
		<table><tr><td colspan="2">소방대상물의 구분</td><td>면적</td></tr><tr><td colspan="2">1.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td><td>7천500제곱미터</td></tr><tr><td colspan="2">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td><td>1만2천500제곱미터</td></tr></table>	소방대상물의 구분		면적	1.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		7천500제곱미터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1만2천500제곱미터
소방대상물의 구분		면적									
1.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		7천500제곱미터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1만2천500제곱미터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6.12.30. 개정	제4조(소화수조 등) ① (생략) ②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생략) ③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 나. (생략) ④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2.8.20. 개정	제4조(소화수조 등) ① (생략) ②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생략) ③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제4조제2항 중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표"를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0.6m 이상"을 "0.6m 이상"으로, "것에 있어서는"을 각각 "것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m³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m³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 나. (생략) ④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m³/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호 가목 중 "다음표"를 "다음 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 소방대상물"로 한다.
---	---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소요수량	20m³ 이상 40m³ 미만	40m³ 이상 100m³ 미만	100m³ 이상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양수량	1,100ℓ 이상	2,200ℓ 이상	3,300ℓ 이상

②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MPa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7. 기동장치로는 보호판을 부착한 기동스위치를 채수구 직근에 설치할 것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9.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채수구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10. 가압송수장치에는 "소화용수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 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2.9.15. 제정	제112조 (소화용수의 가압송수장치) ① 소화용수설비의 소화용수가 지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m	

	터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표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table><tr><td>소요수량</td><td>120세제곱미터이상</td><td>40세제곱미터이상</td><td>100세제곱미터이상</td></tr><tr><td></td><td>40세제곱미터만</td><td>100세제곱미터만</td><td></td></tr><tr><td>가압송수장치 치의 1분당 양수량</td><td>1천 100리터이상</td><td>2천 200리터이상</td><td>3천 300리터이상</td></tr></table> ②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5킬로그램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 내지 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은 소화용수설비에 이를 준용한다.	소요수량	120세제곱미터이상	40세제곱미터이상	100세제곱미터이상		40세제곱미터만	100세제곱미터만		가압송수장치 치의 1분당 양수량	1천 100리터이상	2천 200리터이상	3천 300리터이상	
소요수량	120세제곱미터이상	40세제곱미터이상	100세제곱미터이상											
	40세제곱미터만	100세제곱미터만												
가압송수장치 치의 1분당 양수량	1천 100리터이상	2천 200리터이상	3천 300리터이상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제112조 (소화용수의 가압송수장치) ① ~ ② (생략) ③그 밖의 소화용수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소화용수설비"로 본다.	제1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그 밖의 소화용수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소화용수설비"로 본다.												
1998.5.12. 개정	제112조 (소화용수의 가압송수장치)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미터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량을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생략) ② ~ ③ (생략)	제1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미터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량을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6.12.30. 개정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저수량을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생략) ② (생략) ③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7. 기동장치로는 보호판을 부착한 기동스위치를 채수구 직근에 설치할 것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9.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채수구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10. 가압송수장치에는 "소화용수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2012.8.20. 개정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깊이를 말한다)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와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생략) ② (생략) ③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제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한다.

	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을림 장치를 설치할 것 가. 물을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9.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10. (생략)	
--	---	--

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6.12.30.	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2.8.20. 개정	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9.8.24.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2012.8.20. 개정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 까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2015.1.23.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제7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

개정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 까지로 한다.	월 22일"로 한다.
----	--	-------------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15.1.23.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

부칙 <제2015-39호, 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본 자료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의 이전 연혁법령인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1982.9.15.)과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993.11.11.)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매품>